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1005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109071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100585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종결 2023. 5. 23.

판결선고 2023.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D 사이에 2019. 8.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9. 접수 제28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는 주식회사 F와 D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F와 D은 연대하여 유한회사 E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3. 6. 1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6412).

나. 원고는 위 D에 대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D의 누나로 피고와 D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망인이 2019. 6. 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H, I, J, D은 2019. 8. 5.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84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을 넘겨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약 30년 된 노후 아파트로 공시지가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약 7,900만 원이고 현재 약 6,740만 원이다.

② 피고는 미혼으로 2004.경부터 지체장애 5급인 부친 망인과 지체장애 5급인 모친 망 K을 모시고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망 K은 2017.경 대장암 수술 후 간암으로 전이되어 투병하다가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9.경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

③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피고가 부모를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소유하도록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2019. 10. 8. 보험금을 해약하여 41,784,827원을 수령한 후 D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출한 금원에 대하여 일부라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면 D 뿐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L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M,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 대피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대 24670㎡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M 대 21705㎡

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N 답 77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R 철근콘크리트조 84.945㎡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47153분의 46.441. 끝.

